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칙

제정	2008. 12. 01.
제1차 개정	2016. 06. 02.
제2차 개정	2016. 12. 15.
제3차 개정	2023. 10. 26.
제4차 개정	2024. 07. 24.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공학교육의 내실화와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공학계열(공과대학, 보건의료대학)의 학부(과) 또는 전공은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7년 신입생부터는 단일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프로그램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제3조(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운영) ① 공학사를 수여하는 학부(과) 및 전공은 「일반프로그램」 과 공학교육인증의 「심화프로그램」 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각 과정의 명칭은 [별표 1] 과 같다.
③ 심화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각 학부(과) 및 프로그램별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공학교육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성취도 달성을 위한 요인과 평가기준은 각 프로그램에 위임한다.
④ 일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학칙에 따른다.

제4조(이수결정) 일반프로그램과 심화프로그램의 이수구분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5조(이수조건) ①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공학교육인증용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칙 제35조의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편입생) 프로그램에 편입한 학생의 전적대학의 학점은 본교 학칙 시행세칙 제2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편입생은 해당 프로그램의 관련 위원회에서 정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른다.

제7조(복학생, 재입학생, 전과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전과생의 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의 관련 위원회에서 정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른다.

제8조(심사시기 및 이수포기) ①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의 이수구분을 위해 공학인증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학과의 학생은 3학년(6학기) 말에 공학교육인증 심의위원회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심사 시 학생이 비인증프로그램 이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1] 과 같은 인증프로그램 포기신청서를 4학년(7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복수전공자, ROTC, 전입생은 예외로 한다.
④ 삭제

제9조(심의위원회) ① 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부(과) 또는

프로그램별로 공학교육인증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②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해당 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속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③ 해당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공학교육센터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1.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 이수구분 심의에 관한 사항
2. 인증프로그램 재이수 희망자 심의에 관한 사항
3. 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공학교육인증 학습성과 달성도 심의에 관한 사항
5. 복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인증학점 인정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보칙)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인증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단, 모든 사안들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4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